

2024년

국도46호선 금남IC2교 등 5개소 성능평가용역 설 계 서



국 토 교 통 부
의 정 부 국 토 관 리 사 무 소

－ 목 차 －

I . 용 역 설 명 서

Ⅱ .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 보 안 대 책

V . 예 정 공 정 표

Ⅵ . 설 계 예 산 서

I . 용역설명서

I . 용역설명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성능평가로서, 설물의 기능 및 사용재료의 성능저하 등을 신속 정확히 조사, 측정, 평가함으로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범위

순번	노선	시설물	위 치	종 별	제 원			비고
					연장(m)	차선수	준공년도	
1	46	금남IC2교	남양주 화도 구암	2	135.0	3	2005	인접시설물(1)
2	46	금남IC3교	남양주 화도 구암	2	180.0	2	2005	인접시설물(1)
3	46	금남IC R-A교(상)	남양주 화도 금남	2	120.0	2	2005	인접시설물(2)
4	46	금남IC R-A교(하)	남양주 화도 금남	2	120.0	2	2005	인접시설물(2)
5	46	마석IC3교	남양주 화도 녹촌	2	175.0	1	2005	

Ⅱ . 일 반 과 업 지 시 서

II.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수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39호) 등에 의해 점검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사전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보고서 작성은 조사내용과 평가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록내용과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4. 본 용역은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5. 사진첩에는 교량 및 터널의 정면도 및 측면도를 첨부하고 부분적인 사진의 번호를 부과하여 측면도에 표시하고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 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첨부 되어야 한다.
 - 가. 사전검토 보고서
 - 나. 안전관리계획서
 - 다. 과업수행 참여자에 대한 학력, 경력, 전공분야 등
 - 라. 과업수행에 대한 세부공정계획에 관한 사항
 - 마.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에 용역 실적정보 등록/보고 후 캡처화면 제출
7. 안전관리
 - 가. 본 과업수행 참여자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는 과업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 나. 현장조사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전에 교량 및 터널 전후에 안내표지판 및 속도제한표지, 위험표지판 등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아울러 교통사고 등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 다. 「중대재해처벌법」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Ⅲ .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용역기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 되었을 때
-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 가. 용역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
- 나.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 다.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과업수행의 흐름

가.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등

나. 현장조사 및 시험

- 주요부재의 외관조사(육안검사)
 - 콘크리트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 강재균열 및 도장, 부식상태 등
- 시설물의 내구성능 및 사용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현장재료시험

- 콘크리트 시험(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염화물함유량 시험 등)
- 강재시험(강재 비파괴시험 등)
-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작동유무 등
- 결함의 발생 또는 진전된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다. 안전성능평가, 내구성능평가, 사용성능평가

- 외관조사 결과분석
-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분석, 내구성능 및 사용성능 관련 수집자료 분석 등
-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안전성능, 사용 재료에 대한 내구성능, 사용 환경 및 기능 등에 대한 사용성능 평가
- 시설물 전체의 상태안전성능, 내구성능평가, 사용성능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라. 종합평가

-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평가에 결과 분석
- 전체적인 평가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 시설물의 종합등급 지정

마.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전략 제언

- 시설물의 성능목표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 검토·분석
- 성능목표에 따른 보수·보강 방법 및 전략 제시

사. 보고서 작성

-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4. 적용의 범위

본 특별 지침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그 시행령에 준하여 시행하는 국도 상 시설물(교량, 터널 등)의 정밀안전점검을 포함 및 그 결과를 활용하여 시행하는 성능평가의 사항을 정한 것이다.

5. 적용기준

시설물(교량, 터널 등)의 성능평가에 있어서 관련법령(규칙포함)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본 특별지침서를 따른다. 본 특별 지침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지침서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동법령 및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다. 교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세부지침

라. 교량조사기입지침서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기준정립

바.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운영 및 유지관리 최종보고서

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점검기관 및 점검업무 종사자는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효력을 가진 모든 법률, 조례 및 다음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나. 근로기준법

다. 산업안전보건법

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마. 대기환경보전법

바. 도로법

사. 자동차관리법

아. 하천법

자. 산지관리법

차. 문화재보호법

카. 전력기술관리법

타. 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교부세법

파.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등

7. 성능평가의 일반

성능평가의 목적은 현장조사 및 각종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의 객관적인 현재의 상태와 장래의 성능변화를 파악·예측하고, 이를 통해 관리주체가 보수·개량·교체 등의 최적시기 결정 등 합리적 유지관리 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다.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포함하거나 그 결과를 활용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할 경우 제1종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을, 제2종 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을 포함하거나 그 결과를 활용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8. 책임기술자의 자격

안전점검은 영 별표5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경력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의 안전점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 전반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설계, 안전성평가, 성능회복과 유지관리 등을 포함한 시설물의 공학적 및 기술적인 면에서의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9. 안전점검 시 안전관리

가. 일반

점검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이 중요하므로 점검종사자는 점검기구와 장비를 적절하게 운용하고 안전관리 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점검종사자의 안전

점검종사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상 착용하여야 하며 장구 및 기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밀폐된 작업공간에서의 유해 물질 및 가스와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다.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수급자가 시설물 점검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0. 성능평가서식과 보고서

가. 일반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는 시설물의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성능평가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18의 각 항목에 따라 작성·제출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성능평가 세부지침에 따른다.

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보고서(e-보고서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서두

보고서의 표지는 정밀점검의 개략을 쉽게 알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안전진단전문기관의 장)
- 참여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2)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개요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점검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상·하행, 받침종류, 차선 수, 내진보강 내역, 내진설계 여부 반드시 표기)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기기
- 점검수행일정 등

3) 시설물의 안전성능(상태안전성능, 구조안전성능), 내구성능평가, 사용성능 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평가 결과 등을 작성한다.

- 과거 점검기록과의 연관관계
-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 측정결과와 재료시험 결과의 분석
- 주요한 결함의 발생원인 분석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구조안전성능 평가를 위한 시험 및 계측결과 분석(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 지형·지질·토질조사, 시설물 변위 등의 측정결과 분석)
- 구조계산 및 해석을 통한 결과 및 분석
-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 콘크리트 또는 강재 등의 내구성능 분석 및 결과
- 사용성능평가를 위한 현장 및 실내시험 결과 분석

4) 종합평가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전략 제언

- 성능평가를 통해 결정된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등급을 종합하여 지침 별표16의 종합성능등급 결정
- 시설물의 성능목표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 검토·분석
- 성능목표에 따른 보수·보강 방법 및 전략 제시
-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 시 주의사항 등

5) 부 록

- 과업지시서
- 외관조사망도
-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 안정성능(상태 및 구조안전성능) 평가, 내구성능평가, 사용성능평가 결과 자료 등

11. 성능평가 방법

가. 일반

각 시설물별 점검요령이나 세부점검서식(성능평가 등)은 이 지침이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을 활용한다.

나. 자료 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유지관리 지침서 수집 및 분석
- 기존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실시결과 분석 등
- 대상 시설물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
 - 콘크리트 시험 및 강재 시험, 기계·전기 설비 및 계측시설의 작동 유무 등

다. 안전성능평가, 내구성능평가, 사용성능평가

- 외관조사 결과 분석,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를 분석하여 대상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안전성능 평가
- 조사·시험·측정 결과의 분석, 구조계산서(기존) 등 평가자료 분석, 내하력 및 구조안전성능 평가
- 사용재료(콘크리트 및 강재 등)에 대한 내구성능 평가
- 사용환경 및 기능 등에 대한 사용성능 평가

라. 종합평가

-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평가에 결과 분석
- 시설물의 종합등급 지정

마. 유지관리 전략 제언

- 시설물의 성능목표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 검토·분석
- 성능목표에 따른 보수·보강방법 및 전략 제시

사. 보고서 작성

- CAD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아. 성능평가 결과에 대한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등급

상태등급	시 설 물 의 상 태
A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12. 손상 종류 등

가. 콘크리트구조물의 노후화 종류

1) 균열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에서의 균열은 육안으로 분간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반면 프리스트레스트에서의 균열은 기기를 사용하여야 측정 분별할 수 있다. 보통 균열부에는 녹이나 백태의 흔적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균열은 아래와 같이 미세균열, 중간균열 및 대형균열로 나눌 수 있으며 구조물의 중요도 및 특성 등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 미세균열 - 0.1mm 미만
- 중간균열 - 0.1mm 이상 0.7mm 미만
- 대형균열 - 0.7mm 이상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의 미세균열은 구조물의 성능에는 영향이 없으나 중간 및 대형 균열은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서에 기록하여 추적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에서의 균열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점검 중 균열의 길이, 폭, 위치, 그리고 방향에 유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보에서의 균열은 구조적으로 영향이 있는 균열과 구조적으로 영향이 없는 균열로 나눌 수 있다. 구조적으로 영향이 있는 균열에는 최대 인장부 또는 모멘트부에서 발생하여 압축부로 진전되는 수직방향의 휨균열과 부재의 복부에서 주로 발생하는 경사 방향의 전단균열이 있다. 구조적으로 영향이 없는 균열에는 온도로 인한 균열,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 그리고 매스 콘크리트 균열 등이 있다.

균열은 결함원인별로 수축균열, 정착균열, 구조적 균열, 철근부식균열, 지도형상 균열, 동결융해균열로 나눌 수 있다. 부식 등 화학적 작용이 심할 경우 구조적 균열, 철근부식균열, 지도형상균열은 시설물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박리(Scaling)

박리는 콘크리트 표면의 모르타가 점진적으로 손실되는 현상으로 표면에서의 모르타 손실 깊이를 기준으로 아래의 4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책임기술자는 박리의 위치, 크기 및 깊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 경미한 박리 - 0.5mm 미만
- 중간정도의 박리 - 0.5mm 이상 1.0mm 미만
- 심한 박리 - 1.0mm 이상 25.0mm 미만
- 극심한 박리 - 25.0mm 이상으로 조골재 손실

3) 층분리(Delamination)

층분리는 철근의 상부 또는 하부에서 콘크리트가 층을 이루며 분리되는 현상으로 철근의 부식에 의한 팽창이 주요 원인이며 이러한 부식은 주로 염화물이 온(소금, 염화칼슘)에 의하여 발생된다. 층분리 부위는 망치로 두드리며 중공음(中空音)이 나는지 여부로 확인할 수 있다. 책임기술자는 층분리 위치 및 크기를 기록하여야 한다.

4) 박락(Spalling)

박락은 콘크리트가 균열을 따라서 원형으로 떨어져 나가는 층분리 현상의 진전된 현상이다. 박락은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으며 책임기술자는 박락의 위치, 크기 및 깊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 소형 박락 - 깊이 25mm 미만 또는 직경 150mm 미만
- 대형 박락 - 깊이 25mm 이상 또는 직경 150mm 이상

5) 백태(Efflorescence)

백태는 콘크리트 내부의 수분에 의하여 염성분이 콘크리트 표면에 고형화된 현상으로 콘크리트 노후화의 증거이다.

6) 충돌손상

트럭, 탈선열차 또는 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이 손상을 입을 수 있으며 특히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보의 경우 충돌 손상에 유의하여야 한다.

7) 누수

배수공과 시공이음의 결함, 균열 등으로 발생된 누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조사한다.

나. 강재구조물의 노후화 종류

1) 부식

강재에서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노후화 현상으로서 환경적 요인에 의한 부식, 전류에 의한 부식, 박테리아에

의한 부식, 과대응력에 의한 부식 그리고 마모에 의한 부식이 있다.

2) 피로균열

피로균열은 반복하중에 의하여 발생하여 갑작스런 파괴로 진전되기 때문에 점검자가 피로균열부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로균열을 유발하는 요소는 아래와 같다.

- 시설물의 하중이력
- 응력범주의 크기
- 상세부위의 형태
- 제작 상태 및 질
- 파괴 인성(Fracture Toughness)
- 용접의 질

3) 과재하중

과재하중이란 구조물의 설계에 사용된 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말하며 인장부재에서는 신장(Elongation) 및 단면 감소를 압축부재에서는 좌굴을 유발시킨다.

4)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

시설물 부재는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 부재의 뒤틀림이나 변위와 같은 손상을 입을 수 있다.

13. 보수·보강방법

가. 일반

- 1) 보수를 위해서는 성능평가 결과 등을 또 보강을 위해서는 안전성평가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후 보수·보강의 필요성, 방법 및 그 수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 2) 결함이 발생한 구조물에 대한 보수·보강은 결함의 정도 및 종류,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검토, 선정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고 후 결정하여야 한다.
보수는 구조물에 작용한 위해요인에 의해 발생한 구조물의 결함에 대해 손질하여 고치는 것을 말하며, 보강이

란 설계하중 이상의 하중 등 위해요인에 대해 구조물이 안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조물의 내하력 등을 회복 또는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3)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보수·보강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선택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 개축

5)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 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하여, 결함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관리주체에 보고후 선택하여야 한다.

6)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한 각종 결함에 대하여, 보강을 보수보다 주요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또한 전체시설물에서 우선순위 결정은 각 시설물이 가지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검토 후 결정한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과업수행 중 각종 실험과정 및 교량·터널 상태 등을 세부적으로 촬영 사진대지 및 필요할 경우 동영상 촬영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급자는 협조와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라. 최종 보고서는 상기 각항에 제시된 과업수행결과를 수록하여야 하며, 그 내용 체계에 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바. 성과품의 작성

- 성과품 작성은 한글과 한문의 혼용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표기는 교육부제정 영문표기법에 따른다.
-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종료 15일전에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여기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 현장기록야장을 최종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사. 성과품의 제출

- 최종보고서 3부
- 교량 및 터널별 최종보고서 각3부
- 교량 및 터널별 결함부 보수 및 보강계획서 3부(필요시)
- 사진대지 및 외관조사망도(교량 및 터널별) 각 3부
- CD보고서 3장
-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에 기 보고된 용역 실적정보 수정/보고 후 캡처화면 제출
- 건설사업정보화 포털시스템(CALS)의 시설물유지관리 납품파일 작성 후 제출

IV . 보 안 대 책

IV. 보안대책

1. 과업수행 시 각종자료 및 성과품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2. 준공 시 모든 성과품과 원고 전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관련자에게 보안사항을 철저히 주지시키고 조사 시, 지역주민이나 외부에 보안을 유지시킨다.
4. 참여요원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5. 모든 관계서류, 자료 등을 본 사업이외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되며, 서면상의 사전승인 없이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V . 예 정 공 정 표

V . 예 정 공 정 표

공 기 공 종	40일	80일	120일	비고
1. 현장답사 및 관련자료 수집				
2. 현장조사 및 외관성능조사				
3. 점검결과 분석 및 안전성 평가 등				
4. 결과검토 및 보고서 작성				
진 도(%)	30	40	30	
누 계 진 도(%)	30	70	100	

VI . 설 계 예 산 서